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8. 10. 23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10월 12일

나. 발 의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제2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사회건설위원회(2018. 10. 2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국장 장종연)

가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개정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인재)

-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임.
- 주요 개정 내용은
 - 안 제5조제1항에서 현 조례는 구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원의 100분의 3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32, 2019년 이후는 1천분의 34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관련 조항 인용 등 상위법 개정 사항에 맞춰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음.
-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6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10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개정 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라. 입법예고(2018. 9. 13. ~ 9. 27. / 14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하고, 구 지방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) ①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.</u> ② (생략)</p>	<p>제5조(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) ①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, 구 지방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</p>